

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8월 29일

나. 발 의 자: 박세채·김근한·김낙관·김민성·김영길·김영태·김원섭·김재우
박교상·신용하·이명희·이상호·이정화·정지원·허민근 의원(15명)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9월 7일

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박 세 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등을 해소하며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생산녹지·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상위법령 개정반영(안 별표 15, 안 별표 18)
 - 상위법령 반영(특정대기·수질유해물질 기준, 법률 제명 변경 등 반영)

-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학원시설 건축 허용(안 별표 16)
 -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건축 가능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사항 현행화(안 제38조, 안 제50조, 안 제51조, 안 별표 3, 안 별표 6, 안 별표 7, 안 별표 8, 안 별표 9, 안 별표 10, 안 별표 13, 안 별표 20)
 - (당초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
 - (개정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
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 국방·군사시설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
 -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 - 「물환경보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
 - 「건축법 시행령」
- 부서검토 : 도시계획과, 건축과 의견제출(붙임)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
○ 검토 결과,

- 생산녹지·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현행화하고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학원시설 건축을 허용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시킴으로써 타 지자체에 비해 강화되었던 규제를 완화시켜 민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